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라 도 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 제출일자 : 2007년 5월 11일
- ☐ 제 출 자 : 김성배 의원 외 5인

2. 위원회 회부

- ☐ 회부일자 : 2007년 5월 14일
 - ☐ 상정일자 : 2007년 5월 16일
-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사유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사항과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현장감 있게 발언(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씀.
- ☐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 」)를 사용함.
- ☐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토록 되어있는 5분자유발언을 회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제한을 삭제함.
(안 제32조2 제2항·제3항)
- ☐ 임시회 개최일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시간을 “1시간”에서 “100분”으로 변경함.(안 제65조2 제2항)

- ☐ 위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0조제1항, 안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 안 제72조제1항·제2항, 안 제75조, 안 제79조제1항·제2항·제4항, 안 제82조제1항, 안 제83조제1항)

5. 검토의견

- ☐ 위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 5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 ☐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사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내용에는 거의 제한이 없이 5분간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인데, 현행 규칙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 “5분 자유발언”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회의마다 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1시간 이내로 시간을 정한 것도 현실적으로 1~2인의 의원이 발언을 해도 10분 이내 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단서조항에서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성 발언」은 「5분 자유발언」에서 보다는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 회기마다 5인 이상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예전과는 달리 PDP를 이용하여 현장감있고 생생한 자료화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므로 현행 1시간 이내로는 충분한 내용을 전달치 못하고 중간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100분으로 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구정질문과 답변 운영(정례회와 임시회와의 차별성, 일문일답방식, 보충질문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윤리위원회),
-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제2항